

# 산림병해충 방제 기간제근로자 고용조건

## □ 관련근거

- 근로기준법
-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-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(동작구 훈령 제170호)

## □ 근로내용 : 가로수, 산림 및 공원, 쉼터 내 수목 병해충 방제

## □ 근로기준

- 근로시간 : 주5일 근무 (주40시간/1일 8시간)
  - ※ 근무환경에 따라 축소·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임단가는 시간당 비례하여 산정
- 휴게시간 : 1시간(중식 시간 포함)
- 휴 일 : 1주일에 1회 주휴일로 정하며 당해 주간 근무일을 만근한 주휴일은 유급
- 연차휴가 :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매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(유급)휴가
- 연장·야간 및 휴일근무
  -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(22:00부터 익일 06:00까지 사이의 근로)과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50%를 가산하여 지급
  - 시간외 근무상황부 별도 작성 및 관리, 긴급재난 시 초과근무(휴일근무) 시행 후 보고
- 휴 가
  - 연차휴가(유급)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경조사 휴가, 공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따르고 업무와 관련없는 병가는 무급으로 한다.

구 분	대 상	일 수
결 혼	본 인	5
	자 녀	1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
출 산	배우자	5
입 양	본 인	20
사 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2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
- 공 가 :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가를 허가하며, 이 경우 유급
  -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·소집·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
  - 공무에 관하여 국회, 법원, 검찰,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
  -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
  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
  - 그 밖에 공무 수행을 위하여 공가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
## □ 보수산정 및 지급단가

- 노임단가 : 49,310원/일(2014년 노임단가 적용)
- 산정기준
  - 기본급 산정 : 일급(49,310원) × 실제근무일수  
(1일 8시간 미만 근무시 일당÷8시간×근무시간으로 지급)
  - 주휴수당 : 1주일 만근시 1일분 일당액 지급
  - 유급휴가보상 : 1개월 만근시 1일분 임금을 지급하거나 1일의 휴가 부여
  - 휴일근무수당 : 1일간지급단가 × 150% 가산하여 지급
  - 시간외 수당 : 시간급[일지급단가 × (1/8)] × 150%
  - 처우개선수당(월정액) : 최대 210,000원
  - 급식비 : 100,000원, 교통비 : 60,000원
  - 가족수당 : 월 최대 50,000원
    - 배우자 : 월 30,000원
    -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 : 월 20,000원(1명당)
      - 가.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(여자의 경우 55세) 이상의 직계존속
      - 나.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
      - 다. 원서접수 시 제출한 주민등록 등본상의 동거가족을 기준으로 함
- 임금지급일 : 사역부에 의거 익월 5일까지 지급(휴일일 경우 익일)
- 지급 방법 : 기간제근로자의 예금통장에 입금
  - ※ 결근 매1일에 대하여 수당 등의 일액(수당월액을 그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)을 감하여 지급

## □ 인력관리 및 감독

- 근로감독 및 안전교육
  - 현장담당직원 책임하에 작업량 선정 및 작업지시·감독
  - 매분기마다 개인별 근무실적 평가후 개별 연장근로계약 체결
  -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30일전 근무실적 평가 및 해고예고 후 해고
  - 안전교육 시행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기간제근로자 근무수칙 준수
- 근무실적 평가 및 활용
  - 평가시기 : 매분기 근로계약 체결 30일전
  - 평가자 : 사업장별 현장 담당공무원
  -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: 근무실적 평가표에 의함
  - 평가활용 : 매분기별 근로계약 체결시 평가결과 반영